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준금액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서 월 봉급액으로 하는 등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것으로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부부 중 한명이 법관일 경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‘배우자’를 ‘공무원이 아닌 배우자’로, ‘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’을 ‘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’으로 하고 해당 기관에 ‘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’를 추가함(안 제9조제5항)

○ 매주 최초 5시간까지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기준금액을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서 월봉급액으로,

그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함(안 제10조의2제5항)

○ 2005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국가공무원 정액급식비를 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함(안 제11조의2)

4.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　　호　　2020.　.　. 공포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배우자”를 “공무원이 아닌 배우자”로, “인건비가”를 “인건비가 지급되거나”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제10조의2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법관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.

(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)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(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,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	×	$\frac{5}{\text{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$
(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)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(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,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	×	$\frac{\text{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 - \text{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근무시간} - 5}{\text{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$

제11조의2 본문 중 “13만원”을 “14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)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가족수당) ① ~ ④ (생략) ⑤ 부부 중 1명은 법관이고 배우자는 「국가재정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법관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신 설> 2. ~ 5. (생 략) ⑥ ~ ⑪ (생 략)	제9조(가족수당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-----공무원이 아닌 배우자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않는다. 1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. ~ 6. (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 ⑥ ~ ⑪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2(육아휴직수당 등) ① ~ ④ (생 략) ⑤ 육아휴직 대상 법관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「법원공무원규칙」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경우에는 다음	제10조의2(육아휴직수당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(이하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 <단서 신설>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다만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법관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.
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(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,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 × (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-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근무시간) /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	(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)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(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,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 × 5 /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(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)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(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,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 × (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-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근무시간 - 5) /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
⑥ ~ ⑧ (생 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2(정액급식비) 법관에게	제11조의2(정액급식비) -------

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 다만, 국외파견되어 제5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	---------- 14만원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 않는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3480 - 1224